## 사법보좌관규칙

通過 同談

[시행 2024. 4. 23.] [대법원규칙 제3147호, 2024. 4. 23., 일부개정]

법원행정처 (인사운영심의관실) 02-3480-1937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법원조직법」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,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, 업무의 감독,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, 직제,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.

### 제2장 업무범위 및 이의신청

- **제2조(업무범위)** ①「법원조직법」제54조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8. 2. 18., 2011. 7. 28., 2014. 11. 27., 2016. 6. 1., 2018. 4. 27., 2020. 5. 1.>
  - 1. 「민사소송법」제110조 내지 제115조(「행정소송법」제8조제2항,「가사소송법」제12조 및「민사집행법」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「민사소송법」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
  - 2.「민사소송법」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
  - 3. 「민사소송법」제477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에 관한 법원의 사무
  - 3의2. 「소액사건심판법」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이 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
  - 4. 「민사집행법」제32조 및 제35조(동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「민사집행법」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
  - 5.「민사집행법」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
  - 6. 「민사집행법」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
  - 7. 「민사집행법」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·건설기계·소형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. 다만,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.
    - 가. 「민사집행법」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
    - 나. 삭제 < 2020. 5. 1.>
  - 8. 「민사집행법」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물의 인도명령, 같은 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명령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
  - 9. 「민사집행법」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. 다만,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.
    - 가. 「민사집행법」제2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
    - 나. 삭제 < 2020. 5. 1.>
    - 다.「민사집행법」제2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
  - 10.「민사집행법」제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
  - 10의2. 「민사집행법」제258조, 제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
  - 11. 「민사집행법」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동법 제270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・건설기계・소형선박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에서의 법원의 사무, 다만, 제7호 가목의「민사집행법」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.
  - 12.「민사집행법」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유체동산,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8호 내지 제10호의「민사집행법」규정이 준용되는 사무. 다만, 제9호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가목 및 다목의 「민사집행법」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.

- 13. 「민사집행법」제274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11호 및 제12호의「민사집행법」규정이 준용되는 사무. 다만, 제7호 가목 및 제9호 가목·다목의「민사집행법」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.
- 14. 제7호 내지 제9호·제10의2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다음 각목의 사무
  - 가. 「민사집행법」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의 정지 및 제한
  - 나.「민사집행법」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의 취소 및 일시유지
  - 다. 「민사집행법」제52조제2항,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 유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및 개임
  - 라. 「민사집행법」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촉탁
  - 마.「민사집행법」제266조(동법 제270조·제272조 및 제2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)의 규정에 따른 경매절차의 정지 및 경매절차의 취소 ·일시유지
- 15.「민사집행법」제287조제1항(「민사집행법」제301조,「가사소송법」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따른 본안의 제소명령
- 16. 「민사집행법」(「가사소송법」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따른 가압류·가처 분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
- 17.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제3조의3 및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」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및 그 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
- 18.「가사소송법」제2조제1항제2호가목32)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
- 19.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75조제1항, 제4항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(민법 제836조의2제2항, 제3항에 따른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와 관련된 사무를 제외함)
- 20.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무
- 21.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사무
- ②사법보좌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한다.
- 제3조(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)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6. 1., 2017. 3. 31.>
  - 1.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중「민사소송법」제46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령 :「민사소송법」제469조제2항의 규 정에 따른 이의신청
  - 1의2. 제2조제1항제3의2호의 사무 중「소액사건심판법」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 : 「소액사건심판법」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
  - 2. 제2조제1항의 사무 가운데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: 「민사집행법」제 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
  - 3. 제2조제1항제17호의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제3조의3 및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 기명령: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제3조의3제3항 및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•취소신청
  - 4. 제2조제1항의 사무 가운데 「민사집행법」제149조 및 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절차에서 작성한 배당표 : 「민사집행법」제151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표에 대한 이의
- **제4조(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**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처분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(다음부터 "단독판사등"이라 한다)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・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7. 7.>
-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당법률(이하 이 조에서 "해당법률"이라 한다)에서 이의신청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한 때에는 이들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3 31 >
- ③제1항에 따른 처분 중 단독판사등이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, 「가사소송법」제43조에 따른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08. 7. 7., 2018. 8. 3.>
-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에서 정하는 인지나 「가사소송법」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.<개정 2014. 9. 1., 2018. 4. 27.>
- ⑤사법보좌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7. 7.>
-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판사는 해당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다.<개정 2008. 7. 7., 2014. 9. 1., 2018. 4. 27.>
- 1. 이의신청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것
- 2. 이의신청인이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것. 이 경우 각하결정은 해당법률에 규정된 불복신청에 대한 각하재판으로 본다.
- 3.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할 것
- 4. 사법보좌관의 처분중 단독판사등이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것
- 5. 사법보좌관의 처분중 단독판사등이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것. 이 경우 이의 신청은 해당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.
- 5-2. 제5호의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한다.
- 6. 제5호의 경우 이의신청에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에서 정하는 인지나 「가사소송법」에서 정하는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할 것
- ⑦제6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.
- ®제6항제4호의 각하결정과 제6항제5호의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<개정 2014. 9. 1.>
- ⑨제6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.<개정 2008. 7. 7.>
- ⑩이의신청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14. 9. 1.>

**제5조** 삭제 <2017. 3. 31.>

# 제3장 업무의 감독 및 제척 등

- **제6조(업무의 감독)** ①사법보좌관의 업무는 소속법원장(지원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지정하는 소속 법원의 판사가 감독한다.
  - ②사법보좌관은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에게 업무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소속 법원장 및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는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의 처리경과 및 처리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- **제7조(사건의 송부)** ①사법보좌관은 배당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7. 7.>
  - 1. 소속법원장 또는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가 단독판사등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송부를 명하는 경우
  - 2. 단독판사등이 한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 사무인 경우
  - 3.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사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인 경우
  - ②사법보좌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법원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을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.<개정 2008. 7. 7.>
  - 1.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기에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2.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경우 당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사건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
  -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그 사건을 다시 사법보좌관에게 송부하지 못한다. <개정 2008. 7. 7.>
- **제8조(사법보좌관의 표시)** 사법보좌관은 업무에 관한 문서에 기명날인하는 경우 "사법보좌관"이라는 직위를 표시하여 야 한다.
- 제9조(제척·기피·회피) ①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「민사소송법」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-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7. 7.>

## 제4장 자격 및 선발

제10조(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) 사법보좌관후보자(이하 "후보자"라 한다)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미리「법원 공무원규칙」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 [전문개정 2005. 7. 6.]

제11조(자격) 사법보좌관은 「법원조직법」제5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5장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가 된다. <개정 2005. 7. 6.>

제12조(직급) 사법보좌관은 법원이사관・법원부이사관・법원서기관・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.

**제13조** 삭제 <2005. 7. 6.>

제14조 삭제 <2005. 7. 6.>

**제15조** 삭제 <2005. 7. 6.>

**제16조** 삭제 <2005. 7. 6.>

제17조(후보자의 추천 및 선발)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제11조의 경력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원행정처, 사법연수원, 법원공무원교육원, 법원도서관, 각급 법원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후보자를 선발한다. <개정 2005. 7. 6.> ②제1항의 추천은 서면으로 추천받는 자의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비공개로하여야 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법원행정처장은 당해연도 정원등 인사운용사항을 고려하여 추천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18조(후보자의 선발심사)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 <개정 2005. 7. 6.>
  - 1. 당해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력
  - 2. 사법보좌관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직무수행능력
  - 3. 경력 · 인품 · 건강 · 적성 · 상벌 등
  - ②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를 선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구술심사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<개정 2005. 7. 6.>
- 제19조(선발로 인한 승진)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법원서기관(복수직급 포함) 이상의 사법보좌관 결원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 6. 5.]

제20조 삭제 <2005. 7. 6.>

#### 제5장 교육

- 제21조(교육) ①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②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(이하 "연수원"이라 한다)이 관장한다.
- 제22조(등록) ①후보자는 사법연수원장(이하 "연수원장"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
  - ②후보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③연수원장은 후보자가 제2항의 신고를 하였거나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④후보자가 제2항의 신고를 하였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퇴교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 법원행정 처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등록할 수 있다.
- 제23조(교육내용) ①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  - ②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목을 정한다. 교육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
- 제24조(교육기간) 연수원장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간을 정한다.
- 제25조(실무교육) ①연수원장은 각급 법원장에게 후보자의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각급 법원장은 위탁받은 후보자를 지휘·감독하고, 연수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속 판사와 사법보좌관 중에서 지도관을 정한다.
  - ③지도관은 연수원의 지도방안에 따라 후보자를 지도하고, 실무교육이 종료한 후 후보자에 대한 실무수습평가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④지도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.
- 제26조(평가) 후보자의 사법보좌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.
- 제27조(수료) ①후보자가 교육기간의 8할 이상 수업을 받고, 매과목 4할 이상, 전과목 총득점의 7할 이상을 득점하였을 때에 수료한다. 다만,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기준을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연수원장은 수료자에 대한 평가성적을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연수원장은 수료자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한다.
- 제28조(퇴교 및 징계의결의 요구) ①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.
  - 1. 이 규칙 또는 연수원규정에 위반한 때
  - 2. 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결근한 때
  - 3. 교육에 관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
  - 4.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
  - 5. 질병 기타 사유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
  - 6. 그 밖에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
  - ②연수원장은 후보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중대하고 「국가공무원법」제78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연수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에게 퇴교를 명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9조(위임규정)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중 후보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연수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6장 연수 <신설 2011. 9. 14.>

- **제30조(연수)** ① 대법원장은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의 연찬 을 통한 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사법보좌관에 대한 연수는 연수원이 관장하며, 사법보좌관은 연 수원장이 정하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1. 9. 14.]

[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<2011. 9. 14.>]

- 제31조(연수계획 등) ① 연수원장은 다음 연도의 사법보좌관 연수계획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② 연수원장이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본조신설 2011. 9. 14.]

[종전 제31조는 제34조로 이동 <2011. 9. 14.>]

- 제32조(등록 등) ①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
  - ②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이 질병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③ 연수원장은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이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연수에 무단 불참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,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1. 9. 14.]

제7장 보직 <개정 2011. 9. 14.>

제33조(사법보좌관의 전보) ① 삭제 <2014. 4. 3.>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.
- 1.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
- 2. 강임된 경우
- 3.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- 4.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
- 5.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보직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
- 6. 그 밖에 소속법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소속법원장이 제2항제4호·제5호·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보좌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 9. 14.>

[제목개정 2005. 7. 6.]

[제30조에서 이동 <2011. 9. 14.>]

- 제34조(재보직 특례 및 겸임) ①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위로 전보된 법원공무원을 다시 사법보좌관으로 보할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5. 7. 6., 2011. 9. 14.>
  - 1. 제33조제2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
  - 2. 제3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로서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 이외의 처분과 판결을 받은 경우
  - ②사법보좌관은 다른 직위를 겸임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소속기관장은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 보좌관으로 하여금 다른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24. 4. 23.>
  - ③소속기관장은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경우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4. 4. 23.>
  - ④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 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.<신설 2024. 4. 23.>

[제목개정 2024. 4. 23.]

[제31조에서 이동 <2011. 9. 14.>]

부칙 <제3147호,2024. 4. 23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